

**【 주요 위반 내용 】**

- 근로시간 한도(근로기준법 제53조) 위반: 1주 최대 12시간을 한도로 연장 근로 할 수 있으나,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
- 연장수당(근로기준법 제56조) 미지급: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근로계약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, 미지급
- 퇴직금(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) 미지급: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나, 일부항목을 누락하여 평균임금을 과소 산정 하였으며, 이로 인해 퇴직금 과소지급
- 파견업무(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) 위반: 법에서 규정하는 업무 이외의 업무(회계사무원, 건물관리종사자 등)에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
- 그 밖에 ▲취업규칙 변경하였음에도 고용부에 미신고, ▲임신근로자(1명)의 야간근로 제한 위반, ▲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시 '업무내용' 등 필수사항 누락, ▲일부 근로자 건강진단 미실시 등의 위반 사항도 적발

**<체불임금 세부내역>**

(단위: 명, 천원)

연번	회사명	체불금액 합계 (A+B+C)	인원	연장·휴일 가산수당 (A)	인원	통상임금 (B)	인원	퇴직금 (C)
1	00000즈	1,221,753	396	959,641	698	254,478	72	7,634
2	0000오	1,037,143	225	1,021,556	266	13,869	10	1,718
3	00000스	251,568	133	147,760	352	102,810	10	998
4	00000터	494,847	253	443,344	446	50,943	45	560
5	0000루	324,575	129	276,406	198	44,612	185	3,557
6	00000크	170,487	82	136,901	137	6,922	63	26,663
7	0000투	713,911	231	694,204	249	18,202	16	1,505
8	0000즈	56,797	41	53,783	51	2,821	7	193
9	000일	67,426	25	64,075	44	3,291	6	60
10	000스	22,250	18	20,734	32	1,503	1	13
11	000우	48,539	22	45,517	46	2,889	9	133
12	00렛	19,955	26	17,881	27	1,975	3	98
합계		4,429,251	1,581	3,881,802	2,546	504,316	427	43,132